

의안번호	제2741호
의결	2024. 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향숙 의원 등 5인
발의연월일	2024. 1. 5.

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4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5.

발 의 자 : 김향숙, 정영환, 이쌍자,
김희태, 허옥희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, 제6조제6호)
- 나.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1호

- 예고기간: 2024. 1. 5.(금) ~ 2024. 1. 10.(수) 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”을 “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”으로, “이비자함”을 “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군수”를 “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, “사업”을 “사업과 운영 등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<u>이비자합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예산의 지원) <u>군수</u>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<u>사업</u>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이비자합</u>-----.</p> <p>제5조(예산의 지원) <u>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-- <u>사업과 운영 등</u>---- <u>범위</u>-----.</p> <p>제6조(지원대상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</u></p> <p><u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</p>

□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

제6조(조직)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, 시·도회, 시·군·구회 및 읍·면·동회를 두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(職場支會)·연합분회(聯合分會)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,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·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·도회를 두며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시·군·구회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회를 둔다.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삭제 <2016. 5. 29.>